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.

발 의 자 : 이달희 · 김대식 · 김예지
김상훈 · 김종양 · 서천호
박형수 · 최보운 · 박충권
윤재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·진단·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후변화,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, 종합계획은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,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수립 주기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).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·시행 중인 종합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종합계획 등) ① 해양수산 부 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· 진단 ·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 한 <u>종합계획을 수립 · 시행하여 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5조(종합계획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<u>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